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4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차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례안 10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의회사무국

· 문의처: 전화 02-3153-6185, FAX 02-3153-6999

전자우편 july@mapo.go.kr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차 해 영 의원)

의 안 번 호	26-160

발의년월일: 2026. 11.

발 의 자: 차해영, 안미자, 백남환, 배동수, 고안경, 장덕준, 최은하, 남해석, 장정희 장영준 의원(10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과 마포구의회 공무원의 의정활동 또는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안정적인 직무수행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내지 제11조)

라. 소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나. 예산조치: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2026. 11. 19. ~ 11.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또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3.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수임료(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 수사 및 소송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원 및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의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무원 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직무수행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의회 사무처리와 관련된 직무
2.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 명에 따른 공무수행
3. 법령·자치법규 등에 근거하여 의회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직무
4. 그 밖에 의장이 공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직무수행

④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도 임기 중 수행한 제2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가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⑤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이 파견·전출되거나 퇴직한 후에도 의회 소속으로 근무하는 동안 제3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수사

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이 경우 승소사례금은 별표1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2.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기소 전 단계까지 지원한다. 다만,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소 후 재판에 소요된 소송비용을 각 심급별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험·공제 등을 통하여 다른 기관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5. 다른 기관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급받은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금

③ 의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그 원인이 된 행위가 적극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환수 및 감면과 관련하여 의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과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마치면 해산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구의원(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명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마포구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소송결과 보고)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소 전 수사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민사소송이 제기되거나 형사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 보고서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2항 관련)

1. 착수금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지급 기준</th><th rowspan="2">구비서류</th></tr>
<tr><th colspan="2">사건별</th><th>착수금</th></tr>
<tr><td rowspan="5">민사
소송</td><td colspan="2">신청사건
(심리를 거친 경우에 한함)</td><td>1,000천원 이내</td><td rowspan="5">○ 신청서
○ 소가증명원</td></tr>
<tr><td rowspan="3">본안사건</td><td>소송물 가액
산정 불가능</td><td>3,000천원 이내</td></tr>
<tr><td rowspan="2">소송물 가액
산정 가능</td><td>3천만원 미만 1,000천원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000천원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000천원
10억원 이상 5,000천원</td></tr>
<tr><td colspan="2">환송심</td><td>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td></tr>
<tr><td rowspan="2">형사
사건</td><td colspan="2">수사단계(기소 전)</td><td>5,000천원 이내</td><td rowspan="2">○ 신청서
○ 형사사건 관련 증명서류
(고소장, 공소장, 판결문,
수사개시통보서 등)</td></tr>
<tr><td colspan="2">형사재판</td><td>각 심급별 5,000천원 이내</td></tr>
<tr><td rowspan="2">기타</td><td colspan="2">가집행정지신청</td><td>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이내</td><td rowspan="2">○ 신청서</td></tr>
<tr><td colspan="2">헌법재판소 관할
대법원 전속관할</td><td>5,000천원 이내</td></tr>
</table>

2. 승소사례금(민사소송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으로 전부승소하거나 일부승소(100분의 60 이상)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각 심급별로 착수금에 해당 심급의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한다. 최종심의 승소비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전 심급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으로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의 과실 없이 소송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하급심의 착수금에 그 심급의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 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청서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지급 기준	구비서류
가. 인지대: 실비 나. 송달료: 실비 다. 검증비: 실비 라. 감정비: 실비 마. 출장여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름 바. 그 밖의 실비	○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 비고

1. 소송비용은 각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원한다.

2.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 착수금 □ 승소사례금 □ 공통경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구분	□ 구의원 □ 공무원 □ 공무직 □ 기간제근로자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기타( )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 소송비용	금 원		
소송 정보	민사소송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원고) (피고)	
	형사소송	죄명		
		공소청	사건번호	
		피고인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다만, 기소 전에는 수사개시통보서 등 수사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표 1에 따른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

<table>
<tr><td rowspan="6">신청인</td><td>성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td></tr>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4">☐ 구의원 ☐ 공무원 ☐ 공무직 ☐ 기간제근로자</td></tr>
<tr><td colspan="4">☐ 민사소송 ☐ 형사소송 ☐ 기타(　　)</td></tr>
<tr><td>주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전화번호</td><td colspan="4">(휴대폰)</td></tr>
<tr><td colspan="2">(자택)</td><td colspan="2">(사무실)</td></tr>
<tr><td>사 건 명</td><td colspan="5">법원　　사건</td></tr>
<tr><td>판결결과</td><td colspan="5"></td></tr>
<tr><td>감면신청액</td><td colspan="5">금　　원</td></tr>
<tr><td>감면사유</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td></tr>
<tr><td colspan="6">「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귀하</td></tr>
</table>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 보고서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기타( )

<table>
<tr><td>사 건 명</td><td>법원
/공소청</td><td colspan="2"></td><td>사건번호</td><td></td></tr>
<tr><td rowspan="4">당 사 자</td><td rowspan="2">민사소송</td><td>원고</td><td>피고</td><td colspan="2">소송수행자</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형사소송</td><td colspan="2">피고인</td><td colspan="2">소송수행자</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판결결과</td><td colspan="5"></td></tr>
<tr><td>판결일자</td><td colspan="2"></td><td>소송물가액</td><td colspan="2">금 원</td></tr>
<tr><td>판결이유</td><td colspan="5"></td></tr>
<tr><td>향후계획</td><td colspan="5"></td></tr>
<tr><td>첨 부</td><td colspan="5">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상황</td></tr>
</table>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송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귀하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0. 15.] [법률 제21544호, 2026. 4. 14.,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6. 10. 22.] [법률 제21560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4.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의회사무국 이은경
연 락 처	02-3153-616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최 은 하 의원)

의안 번호	26-159

발의년월일: 2026. 11.

발 의 자: 최은하, 채종민, 김해진, 장정희, 장영준, 서종수, 남해석, 고안경, 최영섭, 배동수, 차해영, 장덕준, 허디모데 의원(13)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내실화 및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한 연구단체의 투명한 운영 및 정책연구용역의 효과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연구단체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연구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바.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사.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종료에 따른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6조

나. 예산조치: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2026. 11. 19. ~ 11.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정책연구 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성)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 1명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는 2개 이하로 한다.

제4조(등록 및 변경)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

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연구단체 대표는 소속 의원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변경 및 취소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
3. 연구활동비 책정, 지원 및 회수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정책연구용역의 신청) ① 정책연구용역을 신청하려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정책연구

용역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 및 정책연구 용역비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중 3명
2. 정책연구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명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의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를 참석하게 하여 연구활

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⑤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③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외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6조에 따라 등록취소가 된 경우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⑤ 의장은 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정책연구용역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결과보고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의회에서 발간하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와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되거나 승인된 것으로 본다.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변경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심의결과 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 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설립목적(연구주제) :

3. 구성의원

연 번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 구 단 체 명		
연 구 내 용	주 제	
	목 적	
연 구 활 동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	(별 첨)	
연 구 활 동 비	총 액	금 원 (₩)
	산출내역	※ 세부내역 별첨 - 자료 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자문경비 등
기 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변경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변동의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동일자	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심의결과 통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연 구 단 체 명		
대 표		의 원
연 구 주 제		
심 의 결 과	내 용	
	결 과	
기 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인)

의원 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 구 단 체 명	
대 표	의원
용 역 명	
용 역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용 역 비	금 원 (₩)
연 구 목 적	
용역 내용 및 세부연구 계획	(별 첨)
용 역 결 과 활 용 계 획	
기 대 효 과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 통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연 구 단 체 명		
대 표		의원
용 역 명		
심 의 결 과	내 용	
	결 과	
기 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인)

의원 연구단체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연 구 단 체 명			
연구내용	당초	연 구 주 제	
		연 구 목 적	
		연 구 활 동 비	금 원
	변경	연 구 주 제	
		연 구 목 적	
		연 구 활 동 비	금 원
연 구 활 동 계 획 변 경 사 유			
연 구 활 동 세 부 변 경 계 획			붙 임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변경을 신청합니다.

연 구 단 체 명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별 첨 가 능)
기 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1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연구의 배경 및 연구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연구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연구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일·연구단체명을, 둘째 장(속표지)에는 연구주제·목적·보고서 작성자 및 연구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마지막 장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관련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연구활동 개요

1. 연구주제 :
2. 연구목적 :
3. 연구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연구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 수령액, 집행액 및 잔액을 기재하고, 건 별 집행내역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 사용내역서 예시 〉

수령액	금 원 (₩)		
집행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집행내역	자료수집 및 조사비	금	원 (₩)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 (₩)
	전문가 활동 경비	금	원 (₩)
	기 타	금	원 (₩)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연구내용의 활용방안 및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0. 15.] [법률 제21544호, 2026. 4. 14., 일부개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의회사무국 황인권
연 락 처	02-3153-634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표 발의: 서 종 수 의원)

의 안 번 호	26-158

발의년월일: 2026. 11.

발 의 자: 서종수, 한송이, 김해진, 김진천, 백남환, 안미자, 채종민, 강수영, 원성혜 의원(9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인사청문회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내지 제12조)

라.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인사청문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바.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2026. 11. 19. ~ 11.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사무를 관할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5조(인사청문회)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①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

사항

4.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 기간 중 의결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

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 특별한 이

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요청안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

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0. 15.] [법률 제21544호, 2026. 4. 14., 일부개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의회의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의회사무국 이지예
연 락 처	02-3153-6185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장영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152

발의연월일 : 2026. 11. 13.
발 의 자 : 장영준・강수영・김진천
남해석・장정희・차해영
최영섭・최은하・한송이
허디모데

1.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고도화되는 금융사기 범죄로 인해 구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방 안내 및 홍

보, 교육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금융감독원, 통신사업자, 금융회사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3. 관계법령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4. 조 례 안: 붙임

5. 예산조치: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6. 11. 19. ~ 11.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금융감독원, 전기통신사업자,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1항 1호, 2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 현다영
연 락 처	02-3153-8562

【관 계 법 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16. 5. 29., 2023. 5. 16., 2026. 2. 3., 2026. 3. 31.>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

거. 그 밖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다.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차 해 영 의원)

의 안 번 호	26-161

발의년월일: 2026. 11.

발 의 자: 차해영, 안미자, 백남환, 배동수, 고안경, 장덕준, 최은하, 남해석, 장정희, 장영준, 최영섭 의원 (11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수탁기관에 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도·점검 권한을 강화하고, 수탁기관 내 노동·근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위탁사무의 질적 수준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 종료 시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도록 정함(안 제5조)

나.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강화함(안 제10조)

다. 수탁기관 내 근로여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 제13조, 제14조)

라.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위탁사무수탁기관에 대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 작성 및 외부 회계감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함(안 제 14조)

마. 수탁기관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예산조치: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 2026. 11. 19. ~ 11.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지적사항”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구의회가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을 “확보여부”로 한다.

3.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여건

4. 안전·보건 확보 및 관리능력

6. 수탁기관이 과거 수행한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보고서 등 사무처리 실적

제1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이행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기관 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위탁사무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또는 사무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 중 “시정요구”를 “취소 및 정지, 시정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정조치를”을 “취소 및 정지, 시정조치 등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지도·점검 또는 감사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 ③ (생 략)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등) ① (생 략)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4. ----------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그 밖에 구의회가 요청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여건
<신 설>	4. 안전·보건 확보 및 관리능력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6. 수탁기관이 과거 수행한 민

	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보고서 등 사무처리 실적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7. ---------- 확보여부 ----------
제13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체결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이행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② (생 략)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수탁기관은 기관 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위탁사무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

	료 후 또는 사무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⑥·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⑦ ------ 제6항----------. ----------
제18조(지도·점검 등) ①·② (생 략)	제18조(지도·점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취소 및 정지, 시정요구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되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 취소 및 정지, 시정조치 등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구청장은 지도·점검 또는 감

	사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0. 15.] [법률 제21544호, 2026. 4. 14., 일부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2.11. 8〉

(앞쪽)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제5항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또는 사무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사업수(92건) 회계감사 비용 사업당 평균 2백만원 산정(물가상승률 3% 반영)

: 어린이집은 민간위탁금이 별도 산정되어 있지 않아 제외(80건)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회계감사비용	184,000	189,520	195,206	201,062	207,094	976,881
	소계	184,000	189,520	195,206	201,062	207,094	976,881
□총 비용		184,000	189,520	195,206	201,062	207,094	976,881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의존재원	소계						
	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소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구비)		184,000	189,520	195,206	201,062	207,094	976,881
합계		184,000	189,520	195,206	201,062	207,094	976,881

5. 덧붙이는 의견: 비용추계의 세출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부서의견 반영 시 또는 견적에 따라 변동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구교동
연 락 처	02-3153-853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회계감사비용: 물가상승률 3% 반영 / 2차년도= 1차년도 비용×103%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배 동 수 의원)

의 안 번 호	26-157

발의년월일: 2026. 11.

발 의 자: 배동수, 장정희, 남해석, 장영준, 최영섭, 고안경, 장덕준, 허디모데 의원 (8인)

1. 제안이유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설치 및 운용 중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기금 설치 목적의 실현과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등(안 제6조)

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안 제7조)

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제8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심의사항(안 제9조)

마. 기금운용 성과분석 등의 제출(안 제10조)

바. 기금의 통합 폐지(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 2026. 11. 19. ~ 11.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개별 조례로 설치하는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 또는 조례를 따른다.

제3조(기금 설치의 제한) ① 새롭게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기금총괄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기금총괄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기금 설치의 필요성 및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예산으로의 사업 추진 가능성
2. 특별회계와의 중복성
3.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 가능성
4. 기금 성격에 부합하는 재원 확보의 가능성
5. 구 예산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② 개별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별 조례의 개정을 통해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현금자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소관과장
3. 기금출납원 - 해당 기금 담당팀장

②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영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 수입금의 부과·징수·체납 현황 및 기금의 수납계

좌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현황에 대하여 매월 말 기준으로 기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는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구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각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 여부는 해당 기금별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성격,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 성과분석 등의 제출) 구청장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통합·폐지) 구청장은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선 권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5.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기금과 관련하여 마포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주무부서의 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관광경제국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를 “소관업무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소관업무 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임명하여”로 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0. 15.] [법률 제21544호, 2026. 4. 14., 일부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78호, 2026. 10.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이성애
연 락 처	02-3153-8515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한 송 이 의원)

의 안 번 호	26-146

발의연월일: 2026. 11.

발 의 자: 한송이, 강수영, 고안경, 김진천, 김해진, 남해석, 백남환, 안미자, 원성혜,장덕준,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채종민, 최영섭, 허디모데 의원(16인)

1.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생활체육·문화활동·평생교육에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활동 및 학습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교교육과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학교와의 협약체결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시설의 안정적인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구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학교시설을 개방한 학교의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에 관항 사항(안 제5조).

라.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비, 관리인력 운영비, 안전시설 설치비 및 보험·공제 가입비 등의 지원 근거(안 제6조).

마. 학교시설 개방정보 제공,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안 제7조

부터 제9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라. 입법예고: 2026. 11. 19. ~ 11.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교육과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생활체육·문화활동·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학교의 장이 재량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학교시설의 이용을 허가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학교교육과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개방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계획
2. 학교시설 현황 및 개방 실태
3.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4. 그 밖에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약체결)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의 개방 범위 및 개방 시간
2. 사용자의 범위 및 이용조건
3. 학교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기간, 변경, 해지 및 개방 중단 시 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유지·보수비
2.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운영비
3.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안전시설의 설치비
4.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비용

제7조(개방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개방하는 학교시설의 종류, 개방 시간, 이용방법, 사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학교,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0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8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생략)

생활체육진흥법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7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6. 9. 3.] [법률 제21742호, 2026. 6. 2., 일부개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

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 ③ 이하 생략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2.11.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안 제6조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유지·보수비 2.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운영비 3.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안전시설의 설치비 4.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 정현우
연 락 처	02-3153-895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집 눈높이 창 설치 조례안

(대표 발의: 장 정 희 의원)

의 안 번 호	26-145

발의연월일: 2026. 11.

발 의 자: 장정희, 강수영, 고안경, 남해석, 배동수, 백남환, 안미자, 장영준, 차해영, 한송이, 허디모데 의원 (11인)

1. 제안이유

어린이집 출입문에 영유아의 눈높이에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도록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입장에서 외부환경에 대한 인지를 용이하게 하여 정서적·정신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눈높이 창 설치에 대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눈높이 창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구립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눈높이 창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소관부서: 보육정책과

라. 입법예고: 2026. 11. 19. ~ 11.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집 눈높이 창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집 출입문에 영유아의 눈높이에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눈높이 창을 설치하도록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외부환경에 대한 인지를 용이하게 하여 정서적·정신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눈높이 창”이란 영유아의 눈높이에서 반대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설치된 투명한 창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립어린이집의 출입문에 눈높이 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민간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눈높이 창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모든 보육실 출입문에 눈높이 창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문이 투명한 소재로 되어있는 등 영유아의 눈

높이에서 시야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육실 이외의 공간에 위치한 출입문에도 눈높이 창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기준)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눈높이 창은 충격에 의한 파손 및 파편의 비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눈높이 창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높이나 크기 등은 관계 법령과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눈높이 창 설치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눈높이 창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눈높이 창을 설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창의 파손 여부 등 안전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어린이집 눈높이 창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7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188호, 2026. 3. 24., 일부개정]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2. 3., 2013. 12. 4., 2024. 6. 25.,

2024. 8. 6.>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24. 6. 25.>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2.11.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집 눈높이 창 설치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4조(눈높이 창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모든 보육실 출입문에 눈높이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문이 투명한 소재로 되어있는 등 영유아의 눈높이에서 시야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육실 이외의 공간에 위치한 출입문에도 눈높이 창을 설치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미래교육국 보육정책과 조황호, 박솔지
연 락 처	02-3153-1663. 890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 해 진 의원)

의 안 번 호	26-155

발의년월일: 2026. 11.

발 의 자: 김해진, 강수영, 고안경,김진천, 남해석, 백남환,원성혜, 장덕준, 최영섭,최은하, 한송이, 허디모데의원(12인)

1. 제안이유

○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및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적용관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다자녀가정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마. 양육·교육·복지·주거·문화·체육 등 분야별 지원사업 및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중복 지원 제한 및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우대·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소관부서: 가족정책과

라. 입법예고: 2026. 11. 19. ~ 11.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서울특별시에서 다자녀가정에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의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자녀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다자녀가정의 현황 및 정책수요에 관한 사항
3.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이 「인구전략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자녀가정의 현황 및 정책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우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녀의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
2. 보건·의료·복지 및 교통에 관한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에 관한 지원

4. 문화・관광・체육 및 여가생활에 관한 지원

5.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의 관람료・입장료・이용료・사용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의 감면

6.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감면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대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 지원 제한 및 우대・지원의 중단) ① 다자녀가정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대 또는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우대 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전부개정]

제15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하 “지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미래교육국　가족정책과　송미희
연 락 처	02-3153-839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남 해 석 의원)

의 안 번 호	26-156

발의년월일: 2026. 11.
발 의 자: 남해석, 강수영, 김진천, 김해진, 안미자, 원성혜, 장정희, 차해영, 허디모데 의원(9인)

1. 제안이유

○ 금주구역의 지정대상 및 관리절차를 구체화하고, 음주폐해 예방·지원 및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주구역 지정대상을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유치원, 의료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제1항)

나. 금주구역 지정 시 관계 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 지정·고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지역축제 및 문화·체육행사 등에서 금주구역 내 일시적 음주 허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5항)

라. 금주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 관리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6항)

마. 음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 대한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유관기관 협력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의2)

바. 금주구역 관리 및 음주폐해 예방·지원을 위한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근거를 정비함(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소관부서: 건강증진과

라. 입법예고: 2026. 11. 19. ~ 11.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금주구역의 지정)”을 “(금주구역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4”를 “제8조의4제1항”으로,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6.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7. 구 또는 구의 출자·출연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및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그 부지

8. 그 밖에 구청장이 음주폐해 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 해당 시설의 관리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취지, 장소와 범위, 시행일 등을 구보 및 구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4 제3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문화·체육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금주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 또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금주구역 안내, 음주행위 계도 등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 구청장은 음주로 어려움을 겪는 구

민을 발견하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구민의 참여 등)”을 “(구민의 참여 및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조성과 관련하여”를 “환경조성, 금주구역 관리 및 음주폐해 예방·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로,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을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제8조의4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3.24.>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관내 버스·택시정류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3.24.>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3.24.>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 설>	6.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

	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신 설>	7. 구 또는 구의 출자·출연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및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그 부지
<신 설>	8. 그 밖에 구청장이 음주폐해 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기관, 해당 시설의 관리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취지, 장소와 범위, 시행일 등을 구보 및 구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4제3항 및 「국민건강증진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문화·체육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 설>	⑥ 구청장은 금주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 또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금주구역 안내, 음주행위 계도 등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 구청장은 음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발견하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민의 참여 등) ① (생략)	제9조(구민의 참여 및 협력)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② ---------- 환경조성, 금주구역 관리 및 음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주폐해 예방·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

【관 계 법 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법률 제21607호, 2026. 4. 30., 일부개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1. 9.] [보건복지부령 제1173호, 2026. 5. 8., 일부개정]

제5조(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법 제8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1. 12. 3.>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제5조 관련)

1. 안내표지 부착 위치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는 표지판이나 스티커의 형태로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 출입구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2. 안내표지 내용

가. 안내표지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금주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

(예시 1)	(예시 2)	(예시 3)
	금 주 구 역	금 주

2)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장소는 금주구역으로서 이 구역에서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지정된 금주구역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안내표지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다. 안내표지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일본어 또는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라. 필요한 경우 안내표지 하단에 아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성은
연 락 처	02-3153-9054